

---

- 2020년 일자리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지침**

---

**2020. 6.**

**청년지원센터**

# 목 차

<b>I. 총 칙</b> .....	<b>1</b>
1. 목적 .....	1
2. 추진근거 .....	1
3. 용어의 정의 .....	2
4. 사업의 추진체계 .....	2
5.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임무 .....	3
<b>II. 사업의 추진절차</b> .....	<b>4</b>
1. 참여기업 모집 .....	5
2. 참여기업 선정 .....	8
3. 지원약정 .....	9
4. 참여청년 모집 .....	9
5. 참여청년 공개채용 및 채용결정 .....	11
6. 참여청년 인턴계약 .....	12
7. 참여청년 선정 .....	14
8. 참여청년 정규직 전환 .....	15
9.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	16
10. 참여청년의 지원금 지급 .....	18
<b>III. 지도·점검 관리 및 만족도 조사</b> .....	<b>19</b>
1. 지도·점검 관리 .....	19
2. 만족도 조사 .....	21
<b>IV. 기타 및 유의사항</b> .....	<b>21</b>
※부록1. 5인미만 지원가능 .....	23
※부록2. 지원 제외 업종 .....	26
※기타 (서식1~서식13-2) .....	28

# - 2020년 일자리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 사업 운영지침

### I. 총 칙

#### 1. 목적

-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고용 지원금 등 지역기업 청년고용 유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이 지침은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내용, 지원절차, 각 참여주체의 역할과 사업대상, 지원 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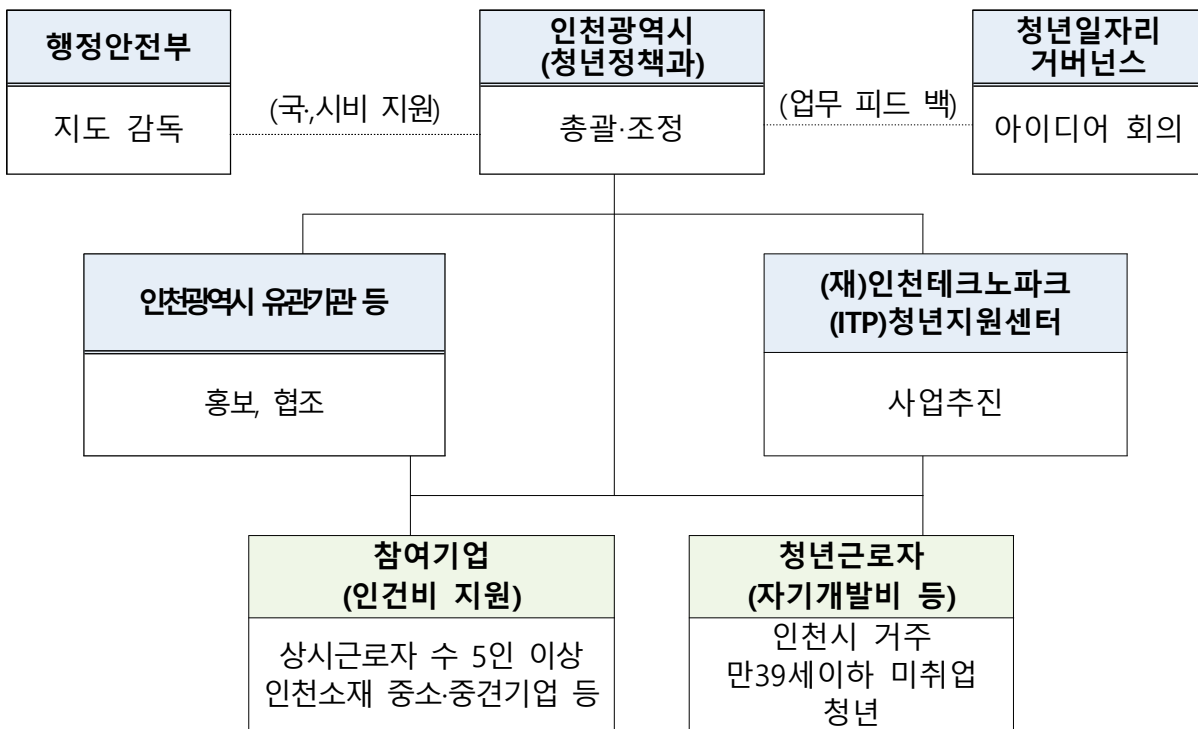
####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취업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 3. 용어의 정의

-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경력형성 및 자기개발 기회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장기근속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운영기관」이란 청년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인천광역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려)는 업체를 말한다.
- 「참여청년」이란 본 사업에 의해 참여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 4. 사업의 추진체계



## 5.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임무

### ○ 인천광역시 : 청년정책과

-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총괄·조정

### ○ 운영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ITP” 이라 한다)

-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운영
- 참여기업 수요조사 및 발굴, 상담 및 사업 관련 안내
- 참여기업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 참여기업 선정, 안내 및 지원약정서 체결
- 참여기업 청년 채용 지원
- 미취업 청년과 참여기업 간 근로약정 체결지원 및 지도·관리
- 참여청년 채용서류 접수 및 적격확인, 지침 등 주요사항 안내
-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금 지급, 참여청년 자기개발·경력형성 지원 등
- 사업 참여 기간 중 참여청년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부정수급 관리, 참여만족도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실시
- 취업연계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 기타 인천광역시가 요청하는 사항

### ○ 참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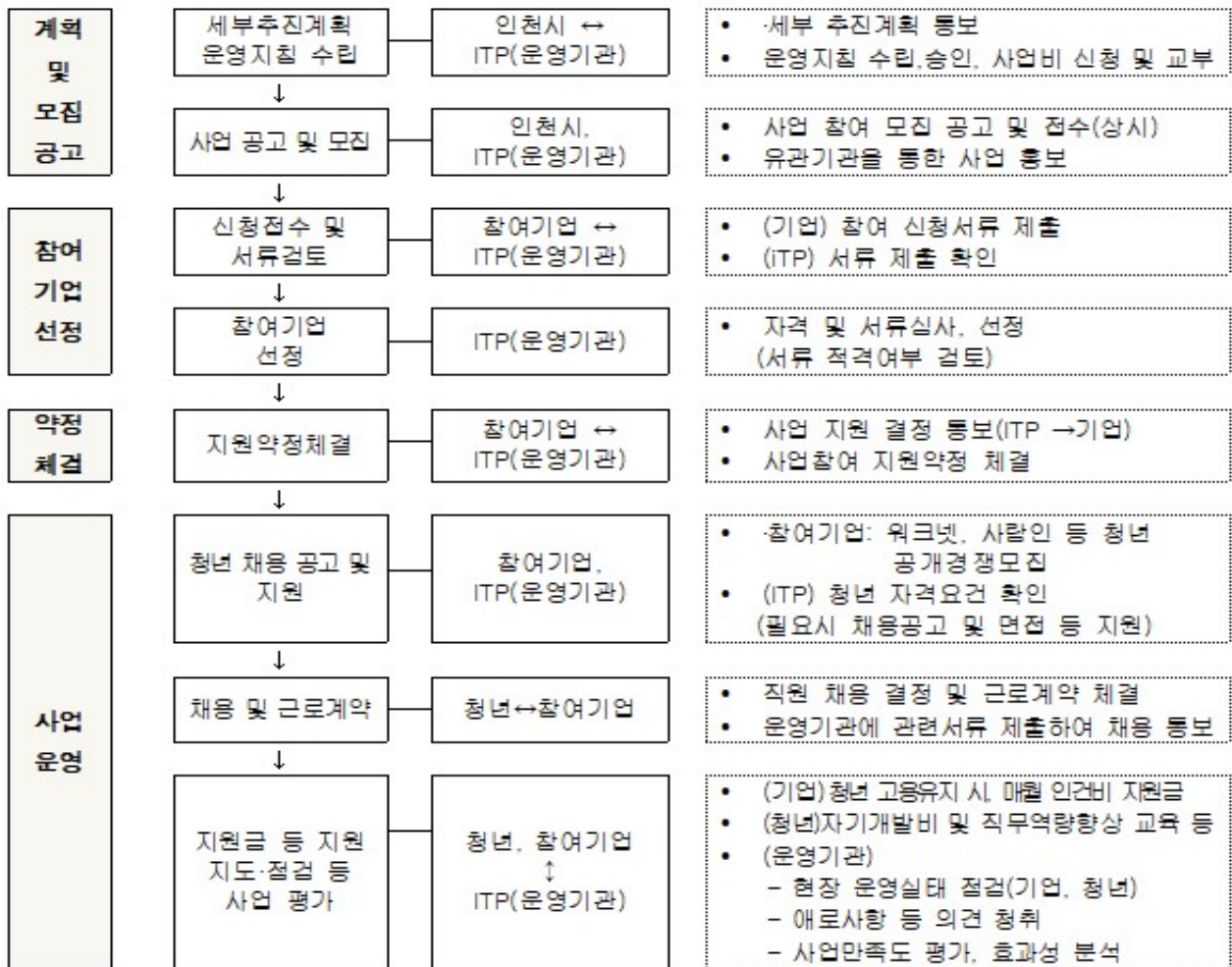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청년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기업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턴(고용) 계약서 체결
-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및 정규직 전환 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및 운영기관에 10일 이내 통보
- 사업 목적 내에서 필요한 교육, 행사 등의 참여 및 기타 협업에 필요한 사항

- 참여청년의 근로·직무향상 및 교육 등 참여 적극 지원, 고용유지 및 관리,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 약정 내용 변경 및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도·점검 및 설문응대 등 기타 요청사항 협조

○ 참여청년

-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 있는 근무 이행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
- 참여청년 대상 지원하는 네트워킹 및 교육 등 적극 참여
- 참여기업 취업상태 유지 및 정주를 위한 노력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도·점검 및 설문응대 등 기타 요청사항 협조

## II. 사업의 추진절차



# 1. 참여기업 모집

- 모집기간 : 2020. 7. 1.~ 수시 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기업 선정일 이후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지원
  - 급여 지급조건은 월 1,875,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기간은 선정일 기준 인턴고용(3개월) 및 정규직 전환(3개월) 총 6개월 지원한다.

구 분	부담 주체	부담률	산출기초(1인 기준)	1인 기준 지원금 합계
지원금	국·시비 보조	90%	- 1,687,500원 × 6개월	10,125천원
자부담	참여기업	10%	- 187,500원 × 6개월 - 4대 사회보험 요율에 의한 기업부담	1,125천원
	참여청년	개인부담	- 4대 사회보험 요율에 의한 개인부담 - 급여에서 공제	

※ 기업에서는 인건비 추가 부담하여 청년에게 지원 가능

## ○ 지원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본사기준 인천시 소재 기업 대상만 지원
- 단,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 ③ 지식기반서비스업
  - ④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sup>1)</sup>,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 업체 등 포함)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인 기업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성격의 기관도 포함
-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 부터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
  - 고용노동부 추가고용장려금, 기타 일자리 지원사업 및 인건비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 단,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지원 가능
  - 뿌리기업의 열악한 환경과 지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력형성장려금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자기개발교육비는 중복 허용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단, 사업주(또는 공동사업주)로만 구성된 1인 기업 등에 한하여 인턴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인턴 채용 후 반드시 인턴을 고용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시 선발 취소 및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인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해외법인의 국내기업 및 지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1) 소비·향락업체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품감상실업, 이 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① 은행, 보험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 예외적으로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프렌차이즈 업체로써 본부회사에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신청 가능

③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④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예외적으로 강사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직 업무는 신청 가능

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지원대상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 채용한도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분	채용 한도(소수점 이하 절상)
5인 미만	- 5인 미만 지원 대상 확인 필수 -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5인~10인 이하	- 상시근로자의 30% 이내
10인 초과	-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채용가능 인원의 10% 추가배정 - 제출서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정규직 전환율 80%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의 20% 추가 배정

※ 본·지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본·지사를 구분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 전체 인원으로 판단

## 2. 참여기업 선정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서류 접수(우편, 직접방문, 이메일 등)

### ○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선 정)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 및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①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 기업정보, 지원자격, 조직현황 등 관련 사항,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② 개인(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주 등 자격 여부 확인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 친인척 등 부정 채용 방지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기업 경영의 안전성, 조직구성, 규모 등 확인

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상시근로자 수 확인

⑦ 사업지원금 사용 준수 협약서

⑧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채용가능인원의 10% 추가배정)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해당되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① 벤처기업 지원 업종

②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기타 사업선정에 필요한 추가 요청 서류 등

### 3. 지원약정

#### ○ 지원약정서 체결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별지[서식11] 서식에 따라 지원약정서를 체결한다.
- 지원약정서에는 청년일자리 사업취지,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재제사항, 지도·감독 등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기업은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 지원약정 취소

- (인위적 감원) 기업이 약정 체결일 1개월 이내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의도적 고용조정(근로자 감원)을 한 경우 약정체결을 취소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약정체결일 1개월 이내 감원사실이 있지만, 추가채용하여 상시근로자 수 변동이 없을 경우 지원약정 체결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중복지원 등 부정수급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약정은 취소한다.

### 4. 참여청년 모집

- 모집기간 : 2020. 7월 중 ~ 수시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자기개발비 등

- (교육 지원) 중소기업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함양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기본교육 20시간 이상)
  - \* 상황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등 교육형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직무교육은 사업기간 내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자기개발 활동비 지원) 참여청년은 자기개발·역량강화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을 필수로 참석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턴기간 내 이수 (수료증 또는 증빙서류 제출)
- 아래 분야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및 최소 8시간 이수.
  - ①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온·오프라인 직무교육비 지원
    -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직무훈련과정 등
  - ② 온·오프라인 직무관련 강의 및 교육 지원
    - \* 경제단체 및 학교에서 진행하는 직무와 연관된 교육 또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언어 수강 등. 단, 수료증 발급 가능한 교육
  - ③ 자격증 취득을 위한 원서 접수비, 도서구입비 및 학위취득을 위한 도서 구입비 등
    - \* 자격증 등 취득 또는 응시 관련 증빙 가능한 과정
    - \* 상기 프로그램은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만 39세 이하 청년
  - 근무개시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여부 판단
-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출석일수 2/3이상 이수한 자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만 39세 기준 : 1980. 1. 1 ~ 1980. 12.31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근로와 학습 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 가능하다.

###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및 병역 특례자
  - ※ 병역특례 채용일 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 인턴으로 채용되기 이전에 인턴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 소정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
- 재택 근무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 중인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5. 참여청년 공개채용 및 채용결정

- 모집 규모 : 청년근로자 150명
- 공개채용 및 면접

- (모집공고) 참여기업은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접수, 면접 등을 통해 공개경쟁 선발하고, 공개채용 관련 증빙 자료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청년의 이력서, 기타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년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다.
- (알선·면접 지원) 운영기관은 필요에 따라 참여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을 알선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공개경쟁 모집 여부에 대해 동행면접 또는 채용 면담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확인한다.

#### ○ 채용 결정

- 면접 전형은 참여기업의 내규에 따라 진행한다.
- 참여기업은 선발한 참여청년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참여청년 인턴계약

#### ○ 인턴고용계약 체결

- (인턴계약 체결)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은 채용 결정 후, 인턴고용 계약서에 의거 당사자 간 협의하여 고용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내용 고지) 참여기업은 근로조건, 근로계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청년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확인한다.
- (인턴 기간) 인턴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되, 인턴기간은 최소 1개월(조기 정규직전환 가능) 이상이어야 한다.
- (필수 포함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및 기타 임금 조건, 근무 기간 장소, 업무 내용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 조건) 고용계약은 근로관계 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 기준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또한 참여청년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참여 청년 통지) 참여기업은 인턴고용계약 체결 후 인턴고용계약서 사본을 근로개시 전날까지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규 채용한 청년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 ○ 근로 조건

- (근무 시간) 채용청년 근무는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5일(월~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협의하여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 휴게시간, 휴일 등 조정이 가능하다.
- (근무 장소) 참여청년은 본·지사, 부설연구소 등 인천소재 기업으로써 계약서에 명시된 기업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근로 조건 변경) 기업은 인턴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정규직 전환 이후 참여청년 동의 및 운영기관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하다.
- (재해·질병) 참여청년의 근무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약정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단,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취소된다.
- (교육 등 지원) 참여기업은 인턴기간 종료 후 참여청년이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청년 대상 운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과정 등에 필수적으로 참석시켜야 한다.

※ 상황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등 교육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 계속고용 원칙이지만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의 자발적 의지 또는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1인에 한해 대체채용을 허용한다.

## ○ 급여 지급조건

- (임금 기준) 급여의 구성 및 금액을 명확히 명시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급여는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가산임금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1,875,000원(세전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 (초과 근무) 또한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 근무 발생 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채정은 근로기준법(2020. 5. 26.) 및 시행령, 시행규칙(2020. 1. 31.) 준거
- (급여 지급) 참여기업은 인건비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임금을 참여청년에게 지급해야 한다.

## 7. 참여청년 선정

### ○ 서류제출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 채용 결정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청년근로자 참여신청서 & 참여기업 채용 확정자 명단 통보서
  - ▶ 고용보험 미취업 여부, 타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지원 여부 등
- ② 개인정보 활용·수집·제공 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청년근로자)



- ③ 청년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 ▶ 친인척 등 부정 채용 방지
- ④ 청년근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원 확인증
  - ▶ 고용보험 미취업 사실 여부 확인, 직장가입 상실, 취득 전체 조회 후 발급(주민등록번호)
- ⑤ 졸업(예정)증명서, 휴학·중퇴 및 방송통신·야간학교 재학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⑥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이 체결한 인턴고용계약서
- ⑦ 사업지원금 사용 준수 협약서
- ⑧ 기타 사업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

○ 참여청년 선정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청년근로자의 참여여부를 결정 및 결과를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에게 안내한다.

## 8. 참여청년 정규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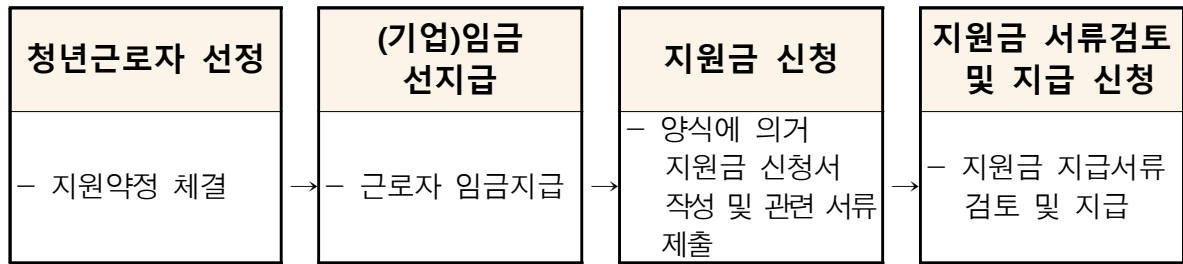
○ 정규직 전환

- (결정·통보) 참여기업은 인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기간 종료일 전, 참여청년과 정규직 전환 여부를 즉시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인턴 종료일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규직 전환 조건)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인턴기간의 근로조건 외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임금은 인턴기간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 조건 변경) 정규직 전환 이후 참여청년 동의 및 운영기관과 협의가 있는 경우 근로 조건은 변경 가능하다.

## 9.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 ○ 지원금 지급 프로세스



- 운영기관은 선정된 기업과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선정일 이후 신규 채용, 선정된 참여청년에 한해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 기업은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선지급(참여기업→청년)하고, 지원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한다.
  - 중도 입사, 퇴사자의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신청 서류 검토 및 근무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 ○ 지원금 지급 방법

- 참여기업은 매월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한다.
-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출근부, ③ 급여대장 사본, ④ 입금 통장(입금증),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4대보험 완납 증명원, ⑦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⑧ 회사 통장사본(최초 1회), ⑨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전환 후 1회)
  - 중도퇴사 시 4대보험 상실내역 추가

- 운영기관은 기업이 청년에게 지급한 고용계약서상의 임금과 일치 여부를 확인(청구 내용) 하고 참여기업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은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개인의 경우에는 회사명의 통장(또는 대표자 통장)으로 지급한다.

### ○ 근태관리

- 참여청년의 근태관리는 기업별 지문인식기 등 근태관리 기록물을 통해 확인하며 참여기업은 매월 지원금 지급요청 시 근태관리 기록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 참여청년 중도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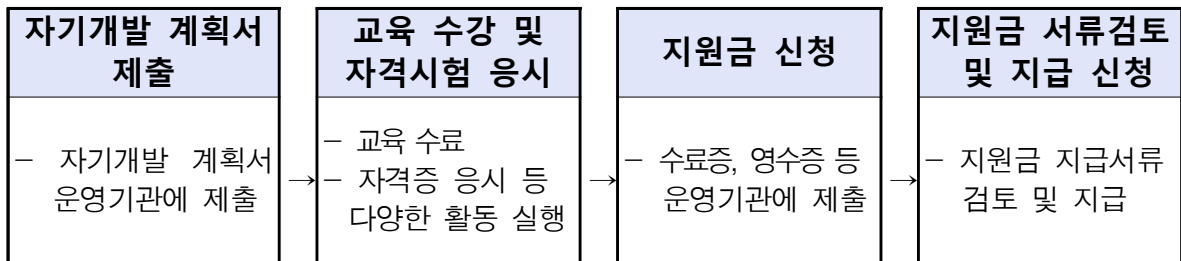
- (통보) 중도퇴사(예정포함) 발생 시 기업은 중도해지일 10일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출 서류) 중도퇴사 후 사직서, 4대 보험 상실 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청년 재참여) 채용 후 1개월 내에 중도퇴사(예정포함)한 청년은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사업 재참여를 허용한다.
  - 단, 범죄사실, 기업의 기밀 유출 등 비윤리적인 사유와 같은 귀책사유인 경우 재참여를 제한한다.
- 참여청년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은 1회에 한해 대체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약정 잔여기간만 가능하다.
  - 사업종료 3개월 미만 시점에는 대체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대체 채용 발생 시, 사업기한 내 정규직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단, 기업의 귀책사유인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차 순위 업체에 지원 실시
- 중도퇴사자에 대한 기업 지원금은 2주(14일)이상 근무 시 지급 가능하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제한

- (임금체불)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은 체불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인턴기간 중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약정 해지한다.
- 약정체결일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훈련 제외) 실시 중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참여청년의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프로세스



- 참여청년은 자기개발비, 직무역량 교육 등 수수료 후 증빙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적정함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 채용청년의 지급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검토 후, 참여청년에게 서류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참여청년은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금 지급 방법

- (자기개발 활동비) 참여청년은 교육 수수료 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자기개발 교육비 신청서 ② 수수료(자격증 등) 및 영수증 ③ 재직증명서 ④ 참여청년 통장사본 (최초1회)
- 운영기관은 청년이 제출한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청구 내용)

하고 참여청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무교육은 약정기간 내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Ⅲ. 지도·점검 관리 및 만족도 조사

#### 1. 지도·점검 관리

##### ○ 정기점검

- 운영기관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하여 부정수급 및 운영전반에 관한 정기점검을 기업당 1회 이상 실시한다.
- 정기점검은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 ○ 특별(수시)점검

- 운영기관은 민원이 발생 및 부정수급 우려 등 필요 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 부정수급 관리

-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청년과 기업에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와 사법처리가 병행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운영기관은 기업 또는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참여 신청, 근로계약 체결 및 정부 지원금을 신청·지급 받은 행위 일체인 ‘부정수급’을 방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

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보조금 환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법상 조치사항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등),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 ○ 부정수급 판단기준

- (기업)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근로자로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청년근로자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 신청 또는 친인척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참여기업이 정부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청년근로자 포함, 다만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한다)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해 감원(인위적 감원)하는 경우, 해당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사업 청년근로자 추가채용 금지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청년)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업에 허위 취업한 경우 또는 자기개발·역량강화 등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허위로 이수한 경우 등을 말한다.
-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 반환하며,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청구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2. 만족도 조사

### ○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는 참여기업, 참여청년에 대해 1회 이상 시행하되 사업실시 후 설문 등 조사 방법을 통해 애로사항 등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게 기업 고용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사업 종료 이후, 고용유지 등 사업 효과에 대해 분석 후, 차년도 사업 도출 및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 IV. 기타 및 유의사항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1년간 동 사업 및 관리 기관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신청기업 대표자(사업주)와의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 전·후 시점에 상관없이 사실이 확인된 즉시 부정수급 처리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는다.
-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해당 내용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 해지 등의 조치 병행

- 기한 내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관련 서류 비치·보존 기간

- 운영기관과 기업은 사업참여, 지원금 신청 등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제반서류 일체를 식별 가능한 출력물 형태로 비치하고 5년간(당해년도 제외)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서류 비치·보존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 [부록1. 5인미만 지원가능 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1	뉴스제공업
63991	DB 및 온라인 정보제공
70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부록1. 5인미만 지원가능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공연	59201 59202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리 커	73201 73202 73203 73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 [부록1. 5인미만 지원가능 업종]

### 신 · 재생에너지산업

구 분	종 류
신에너지(3개 분야)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8개 분야)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부록2. 지원 제외 업종]**

**숙박 및 음식점**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숙박업	55101 55102 55103 55104 55109 55901 55909	호텔업(신청 가능)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신청 가능) 민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음식점업	56111 56112 56113 56114 56121 56122 56123 56129 56130 56141 56142 56191 56192 56193 56194 56199	한식 일반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이동 음식점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56212 56213 56219 56221 56229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부록2. 지원 제외 업종]

###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금융업	64110 64121 64122 64131 64132 64201 64209 64911 64912 64913 64919 64991 64992 64999	중앙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타 금융투자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기금 운영업 지주회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65110 65121 65122 65131 65139 65200 65301 65302 65303 66110 66121 66122 66191 66192 66199 66201 66202 66209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보장보험업 건강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재보험업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증권중개업 선물중개업 증권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11 68212 68221 68222 68223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부록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그 외 제외 업종은 제외대상에서 확인 요청

##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서식목록

[서식 1]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기업) ....	29
[서식 2]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고용계획서 .....	30
[서식 3] 개인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 (기업) .....	32
[서식 4]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청년) ..	34
[서식 5] 개인정보 활용·수집·제공 동의서 및 사실확인서 (청년근로자) .....	35
[서식 6] 채용 확정자 명단 통보서 .....	36
[서식 7] 출 근 부 .....	37
[서식 8] 인턴 고용계약서 .....	38
[서식 9] 표준 근로계약서(안) .....	39
[서식 10] 지원금 신청서 .....	40
[서식 10-1] 자기개발교육비 신청서 .....	41
[서식 11]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원 약정서 ...	42
[서식 12] 자기개발교육 계획서 .....	45
[서식 13-1] 사업지원금 사용 준수 협약서(기업) .....	46
[서식 13-2] 사업지원금 사용 준수 협약서(청년) .....	47



[서식2]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고용계획서

모 집 조 건	담당직무			근무시간		
	채용예정인원	명	임금	원	정규직전환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사업장주소					

기 타 정 보	매출액			주력상품		
	정부지원사업 참여현황					
	지원사업(과제)명	주관기관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종료여부	

1. 청년근로자 근무내용(업무/직책/임금/복리후생/교육훈련 계획 등)	
○	
○	
○	
2. 청년근로자 근무 예정 장소 사진	



3. 업체소개

- 
- 
- 

4. 기업 주력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 등

- 
- 
- 

5. 본 사업 참여시 기대하는 방향 (직원역량 등)

유의사항

1. 운영기관은 청년근로자의 직무교육에 대해 일정시간 이수 요청을 할 수 있고, 동 사업 참여자로서 기업 및 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2. 상기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참여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위와 같이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고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개인(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기업)

<b>신청기업</b>	<b>기업명</b>		<b>사업자등록번호</b>	
	<b>대표자명</b>		<b>기업형태</b>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b>실무담당자</b>	(직위:                    )	<b>연락처</b>	

###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b>수집·이용 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 접수/심사/지원</li> <li>•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li> </ul>
<b>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b>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계좌번호(은행)
<b>수집하는 기업정보 항목</b>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4대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등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각종 정보 등
<b>보유이용 기간</b>	•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b>보유이용 근거</b>	• 개인(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b>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b>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인천시(군·구 포함),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b>수집·이용 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li> <li>•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별, 지원자(기업) 관리 등을 위한 개인(기업)정보 제공</li> </ul>
<b>수집하는 개인(기업)정보 항목</b>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
<b>보유이용 기간</b>	•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b>보유이용 근거</b>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b>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권리</b>	(재)인천테크노파크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b>제공 목적</b>	• 주민등록, 4대보험 가입정보 등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b>제3자 (제공 기관)</b>	• 인천광역시(군·구 포함),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재)인천테크노파크 등 업무 관련 기관
<b>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b>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계좌번호(은행)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대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b>보유이용 기간</b>	•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b>보유이용 근거</b>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b>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권리</b>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li> <li>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li> </ul>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li> <li>(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 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li> </ul>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li> </ul>
동의 효력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효력 발생</li> <li>- 지원 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li> <li>-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li> <li>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li> <li>-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li> </ul>
<p>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 5. 청렴이행 및 사업참여 확약

<p>당사(대표자, 실무담당자)는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p> <p>(재)인천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에 지원한 당사(본인)는 귀 기관의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 사업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기타 제한되는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또한 당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기업 대표 및 임원의 친인척 관계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p>	<p>청렴이행 및 사업참여 확약 (미확약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확약함 <input type="checkbox"/> 확약하지 않음</p>
--------------------------------------------------------------------------------------------------------------------------------------------------------------------------------------------------------------------------------------------------------------------------------------------------------------------------------------------------------------------------------------------------------------------------------------------------------------------------------------------------------------------	-------------------------------------------------------------------------------------------------------------

#### 6. 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p>당사(대표자, 실무담당자)는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원 제외기업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운영지침 제외기업 기준 확인) 또한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발생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해당하는 바가 없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문제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p>	<p>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미확인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확인하지 않음</p>
------------------------------------------------------------------------------------------------------------------------------------------------------------------------------------------------------	-----------------------------------------------------------------------------------------------------------

#### 7.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사항

<p>청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고용하고, 현장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p> <p>첫째, 일과 삶의 균형점을 찾는 'Work and life balance'(워라벨)세대들의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p>둘째, 청년을 적극 고용하고 기업의 핵심인재로 양성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p> <p>셋째, 청년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p>넷째, 고용·승진·임금 등에서 기준을 준수하여 고용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p>	<p>청년친화적 조직문화만들기 협조사항(미협조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협조함 <input type="checkbox"/> 협조하지 않음</p>
----------------------------------------------------------------------------------------------------------------------------------------------------------------------------------------------------------------------------------------------------------------------------------------------------------------------------------------------------------------------------------------------------------	----------------------------------------------------------------------------------------------------------------

20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서식 4]

##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청년)

<b>개 인 정 보</b>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      )	-
			휴대전화		
	E-mail(*)	@			

<b>학 력</b>	학교명	전공명	재학기간(연,월)	상태
			. . . ~ . . .	<input type="checkbox"/> 졸업(예정) <input type="checkbox"/> 재학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휴학 <input type="checkbox"/> 중퇴 <input type="checkbox"/> 검정고시 <input type="checkbox"/> 독학사

<b>참 여 자 격 사 항</b>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참여 신청일 이전 채용 예정기업에서 <u>현장실습, 직장체험, 아르바이트, 취업</u> 또는 병역특례 근무한 사실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예정이거나 근무중인 자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참여 신청일 이전 인천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2019년 이전)에 참여또는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취업장려금 미반환 사실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채용예정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귀하

**【첨부서류】**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등
- 18세 미만자 :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식 5]

개인정보 활용·수집·제공 동의서 및 사실확인서 (청년)			
청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참여기업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 채용 및 근태관리 등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계좌번호(은행) •소재지 •4대보험 가입현황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인천시(군·구 포함),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채용청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권	(재)인천테크노파크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채용청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주민등록, 4대보험 가입정보 등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 인천광역시(군·구 포함),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재)인천테크노파크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계좌번호(은행) •소재지 •4대보험 가입현황 •근로계약서 •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권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채용청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4. 주소지 및 근로계약서 확인사항

<p>상기 개인은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지침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 사항인 채용시점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인천임을 확인합니다.</p> <p>또한, 제출한 근로 계약서는 사업신청을 목적으로 재교부된 것이 아니며, 소속기업이 본 과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현장평가 질의응답 등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p> <p>미확인시 해당사업 채용청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확인하지 않음</p>	

2020 년 월 일

청년 취업자 :

(서명 또는 인)





# 인턴 고용 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 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 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인턴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근로계약 체결

1. 인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실제 근무주소) :
3. 업무의 내용 : 부서\_\_\_\_\_ / 담당업무\_\_\_\_\_
4. 소정근로시간 :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까지  
(휴게시간 : \_\_\_\_\_시 \_\_\_\_\_분~ \_\_\_\_\_시 \_\_\_\_\_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예)월 ~ 금요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_\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 월 통상임금 1,875,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2020년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 기본급 : \_\_\_\_\_원, 상여금 : \_\_\_\_\_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_\_\_\_\_원, \_\_\_\_\_원, \_\_\_\_\_원
  - 임금계산기간 : 매월 \_\_\_\_\_일 부터 매월 \_\_\_\_\_일까지
  - 임금지급일 : 매월(또는 익월)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수당(통상시급 ×1.5배)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의함.

	2020 년	월	일
(사업주) 사 업 장 명 :	(전화 : _____ )		
사 업 장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원약정서

제1조(목적)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운영기관' 이라 한다)와 \_\_\_\_\_(이하 '참여기업' 이라 한다)간에 『2020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청년근로자 지원내용)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에게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배정인원	지원기간	지원금액
	총 6개월 지원(인턴고용 3개월, 정규직 전환 3개월) * 단 채용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2021.6월)	월 1,687,500원/1인

제3조(청년근로자 근로조건) ① 청년근로자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다만, 통상임금은 월 1,875,000원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한다.

제4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근태관리 등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청년근로자 채용) '참여기업'은 청년근로자 채용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약정기간 동안 월1,687,50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근로자사업 약정을 중도해지, 청년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또는 청년근로자가 임의사직하거나 '참여기업'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2주(14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③ '참여기업'은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에 대한 '운영기관'의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지원금 신청시 급여대장 및 임금증 사본 등 필요 제반서류를 첨부한 청년근로자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근무 개시한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지원 기간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지원금은 본 약정서의 지급수준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참여기업'은 「운영지침」 및 본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벌)** '참여기업'은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채용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고용조정(근로자 감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약정체결일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훈련 제외)** 실시중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참여기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참여기업'이 정부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리하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해 감원(인위적 감원)하는 경우, 해당 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청년근로자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⑥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근로자 지원약정일 1개월 이전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이상 유지 시는 제외한다.

⑦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b>자기개발 교육 계획서</b>					
<b>신청인 (청년)</b>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휴대번호			이메일	
<b>지급희망 금융계좌</b>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년)
<b>기업 정보 (근무지)</b>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담당업무 (청년)			입사일	2020 . . .
<b>교육 내용</b>	<p><b>아래분야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및 최소 8시간 이상 이수</b>  <b>&lt;인턴기간 중 필수이수, 수료증 제출&gt;</b></p> <p>①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온·오프라인 직무교육비 지원                      - 예:인턴십 이해와 활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직무훈련과정 등</p> <p>② 온·오프라인 직무관련 강의 및 교육 지원                      - 경제단체 및 학교에서 진행하는 직무와 연관된 교육 또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단, 수료증 발급 가능하여야 함</p> <p>③ 자격증 취득을 위한 원서 접수비, 도서구입비 및 학위취득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                      - 원서접수비 + 도서구입비 필수이며, 합계가 10만원 이상일 것</p> <p><b>※ 상기교육 외 워크샵, 컨설팅 등 직무역량 교육(기본교육 20시간 별도)</b>                      - 인턴기간 내 필참, 운영기관 세부일정에 따름, 일정수립 후 별도 안내예정</p>				
<b>교육 희망 사항</b>	교육과정	<input type="checkbox"/> 1항 <input type="checkbox"/> 2항 <input type="checkbox"/> 3항 <b>※ 상기 분야 중 1가지이상 선택</b>			
	카드번호	_____ - xxxx - xxxx - _____ i) 카드번호 16자리 중 앞,뒤 4자리 기재 ii) 신청자 본인명의로 카드결제만 인정			
	비 고	- 입사 후 10일 이내 계획서 운영기관 이메일 제출(youngcha@itp.or.kr) - 자기개발교육비는 인턴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지급.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자기개발 교육 계획을 제출합니다.**

2020 . . .

신청인(청년)

(서명 또는 인)

## 사업지원금 사용 준수 협약서(기업)

본인은 인천광역시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으로 지원 약정하여 지원금을 수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시 제출한 서류의 기업에 대한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본인(대표자)의 책임으로 한다.
2.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을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는다.
3. 지원금을 수급 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근기록 및 임금지급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4.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근거자료 보관한다.
5.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을 준수한다.

상기 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 한 경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약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 고발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 .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사업지원금 사용 준수 협약서(청년)

본인은 인천광역시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으로 지원 약정하여 지원금을 수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시 제출한 서류의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본인(청년)의 책임으로 한다.
2.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친인척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3. 지원금을 수급 할 목적으로 사업장과 출근기록 및 임금지급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4.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근거자료 보관한다.
5.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을 준수한다.

상기 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 한 경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지원금 반환, 고발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 . . .

청년 근로자 :

(서명 또는 인)